

수입 마늘(GARLIC)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3 7. 28~8. 29
- 조사지역 : 서울, 부산, 인천
- 조사대상 : 수입업체,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 실수요업체 등

2. 원산지 및 분포

- 야생종이 발견되지 않아 원산지에 대해서는 서부 아시아가 원산지라는 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분명치가 않은데, 온대 유럽을 원산지로 보는 학자도 있음
-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지역과 미국의 루이지애나·텍사스·캘리포니아, 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인도·서부아시아·열대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

3. 재배역사와 전파

-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900년경에 축조된 피라미드 벽면에서 피라미드를 축조한 노무자에게 나누어 준 마늘의 양에 관한 기록이 출토됐고, 기원전 1550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집트의 고문서에도 허약한 사람과 두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음
- 마늘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알려졌고, 유럽에는 지중해연안으로부터 전파됐고, 아메리카대륙에는 16세기 초에 유럽으로부터 도입됐으나 재배는 18세기 후반부터라고 하며, 16세기 초에 멕시코를 정복한 코티즈(Cortez)가 멕시코에서 마늘을 먹었다고 기록한 것이 신대륙에서의 첫 기록임
- 중국에는 기원전 2세기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중국 진 나라때 문헌 《박물지》에는 ‘중국에는 본래부터 산(蒜)이 있었는데 한나라의 장건(張騫)이 서역(지금의 이란)에서 이와 비슷하면서 훨씬 큰 것을 가져 왔으므로 이것을 대산(大蒜) 또는 호산(葫蒜)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음

수입마늘

- 500년경의 《신농본초경집주》에는 ‘요즘 사람들이 호산(葫蒜)을 대산(大蒜), 산(蒜)을 소산(小蒜)이라 한다’고 기록돼 있고, 또한 《본초강목》에는 ‘중국에는 산에 산산(山蒜), 들에 야산(野蒜)이 있었고 이것을 재배해 산(蒜)이라 했다 그러다가 한나라에 이르러 장건(張騫)이 서역에서 포도·호두·서류·호초 등과 함께 산의 새로운 품종을 가져오게 되니 이것을 대산(大蒜) 또는 호산(葫蒜)이라 하고 전로부터 있었던 산(蒜)은 소산(小蒜)이라 해 서로 구별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음
- 인도에 전파된 내력은 분명하지 않으나 기원전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기원전 500년에 석가모니가 불교를 열었으므로 그 이후는 별로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에는 2000년전 한반도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서기》(720)와 《본초화명》(918)등에 등장함
- 한국에는 중국을 거쳐 전래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단군신화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도 마늘이 기록됨
 - 단군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오늘날 재배되고 있는 마늘과 같은 것이 아니고 연대와 내용으로 미루어 산지에 야생하는 달래나 산마늘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마늘은 ‘입춘 후 해일에 산원에서 후농제를 지낸다’는 내용으로 보아 마늘이 재배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짐
 - 고려시대의 문헌 《향약구급방》에는 마늘의 일종이 재배된 기록이 있으며, 1527년에 최세진(崔世珍)이 편찬한 《훈몽자회(訓蒙子會)》에서는 산(蒜)은 마늘, 소산(小蒜)은 달래야산(野蒜)은 족지라 했고, 《동의보감》에서는 대산(大蒜)은 마늘, 소산(小蒜)은 족지, 야산(野蒜)은 달랑괴로 구분했음 《조선농회보(朝鮮農會報)》(1930)에는 재배품종으로 마늘과 오랑캐마늘의 기록이 있는데 마늘은 소형종, 오랑캐마늘은 대형종으로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록이 있음 여기에서의 오랑캐마늘은 도입종으로 추정됨

4. 주요국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천ha/천톤)

구 분	'99		'00		'01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중 국	468	5,986	485	6,486	489	6,600
인 도	119	495	120	500	120	500
한 국	42	484	45	474	37	406
미 국	16	336	18	337	18	337
이집트	11	224	12	267	9	215

자료 : FAO 농업생산연감 2001

- 마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아세아지역국가들로서 2001년 세계 총 생산량 10,121천톤 중 81.5%인 8,249천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들 나라 중 마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세계 총 생산량의 65.2%인 6,600천톤을 생산하였고, 다음은 인도 4.9%인 500천톤, 한국 4.0%인 406천톤 순이며, 북·중미국가로서는 미국이 3.3%인 337천톤,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2.1%인 215천톤을 생산하였음

* 세계 주요국의 마늘 생산량 : 붙임1 참조

5. 수입동향

가. 수입자유화 현황

- '93. 12월 UR협상이 타결되어 '95. 1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의 농축산물시장은 관세에 의한 수입개방 체계로 전환되었음.
- '96년말 HS코드(국제표준상품분류)기준으로 1,424개 농축산물중 1,363개가 개방됨
- '97. 7. 1일 돈육, 계육, 오렌지·감귤류, 생사 등 37품목 및 2001. 1. 1일 8품목(젓소, 육우, 쇠고기 등) 개방
- 2004년까지 수입자유화 일정이 유보된 쌀관련 16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되어 있는 실정임 (쌀 관련품목 :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찰쌀, 돼미, 쌀가루 등)

나. 연도별 시장접근물량(MMA)

(단위 : 톤)

구 분	'98	'99	'00	'01	'02	'03(6)
시장접근물량	10,609	11,252	11,895	12,538	13,181	13,824
수입이행물량	10,609	3,900	11,895	12,533	13,180	-
이행율(%)	100.0	34.7	100.0	99.9	100.0	-

※ '99. '00년도는 건조마늘로 대체 도입한 량을 신선마늘로 환산적용(수율25%)

주) 시장접근(Market Access) 물량

○ UR 농산물협상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국내의 가격차인 관세상당치(TE)에 의해 개방을 할 경우,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88~'90년 평균 국내소비량의 3~5% 수준인 일정물량은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 현행시장접근물량(CMA)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구분함

-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UR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의 기준년도('88~'90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C/S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C/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해당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 CMA(Current market Access : 현행시장접근)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88~'90년)의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해당품목 : 참깨, 땅콩, 대두, 팥, 메밀)

다. 기본관세율

연 도	'98	'99	'00	'01	'02	'03	'04
종가세율(원/kg)	1,920	1,900	1,880	1,860	1,840	1,820	1,800
종량세(%)	384	380	376	372	368	364	360

6. 수입현황

가. 국영무역품(일반내수용)

- 국영무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HS코드 : 0703-20-9000(신선·냉장마늘), 0712-90-1000(건조마늘)
- 수입방법

국내 일반내수용 마늘의 수입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MMA(시장접근)물량 한도 내에서 연간 수입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수급상황을 감안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업체가 해당물량을 적기에 도입 공사에 인도함

- 입찰방법 : 일반내수용 마늘 입찰공고 후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
- 공고내용 : 품목, 수입물량, 선적기한, 도착예정일, 도착항구, 원산지,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구매규격 및 검역조건 등

- 포장재 및 규격

포장재	규격(kg)	운반조건
PP그물망	20	7~8월은 일반, 기타기간은 냉장컨테이너로 운반

* 하절기(7~8월)는 짝이 날 염려가 없어 일반컨테이너 사용

- 연도별 수입실적(국가전체)

(단위 : 톤, 천\$)

연도	신선·냉장마늘 (HS-0703-20-9000)		건조마늘 (HS-0712-90-1000)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8	25,633	10,533	421	152	26,054	10,685
'99	14,355	5,939	641	368	14,996	6,307
'00	76	30	3,682	4,900	3,758	4,930
'01	12,618	8,135	33	31	12,651	8,166
'02	13,180	6,996	63	43	13,243	7,039
'03(6월)	103	39	67	60	170	99

자료 : www.kita.net/종합무역정보/한국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수입마늘

- 우리나라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01년도 12,618톤, 02년도 13,180톤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함

나. 민간수입품

1) 냉동·탈피마늘

- HS코드

냉동마늘	탈피마늘
0710-80-2000	0703-20-1000

- 냉동마늘과 탈피마늘의 구분

- 냉동마늘 : 마늘을 탈피하여 10kg 비닐봉지로 소포장하여 -30℃로 급속 동결한 마늘임
- 탈피마늘 : 마늘을 탈피하여 10kg 비닐봉지로 소포장한 마늘임

- 03년도 관세율

(단위 : %)

구분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양허관세 추천	양허관세 미추천	비 고
냉동마늘	30	27.9	-	-	WTO협정세율은'03.1.1~12.31까지 적용
탈피마늘	50	-	50	364	양허관세관련세율은'03.1.1~12.31까지 적용

- 운송방법 및 수입 소요일

- 운송은 해상운송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함
- 운송소요일 : 중국(청도항)출발 부산항도착 통관일까지 약 7일소요

- 수입국가는 가격이 저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산이 대부분이며,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도 소량이 수입됨

수입마늘

○ 연도별 수입실적

(단위 : 톤/천\$)

연도	냉동마늘 (HS-0710-80-2000)		탈피마늘 (HS-0703-20-1000)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8	7,795	3,853	-	-	7,795	3,853
'99	18,598	7,664	-	-	18,598	7,664
'00	3,815	2,463	195	83	4,010	2,546
'01	7,832	5,258	-	-	7,832	5,258
'02	10,159	6,196	-	-	10,159	6,196
'03(6월)	7,886	3,532	328	127	8,214	3,659

자료: www.kita.net/종합무역정보/한국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 93년까지는 민간업체의 수입 물량은 100톤 미만의 소량이 수입되어왔으나, 94년부터 급격히 증가되면서 02년도에는 10,159톤이 수입됨

○ 포장재 및 규격

포장재		규격 (kg)	보관온도
속포장	겉포장		
비닐	폴판지상자	10	- 30℃ 냉동보관

2) 식초·초산조제마늘

- HS코드 : 2001-90-9060
- 식초·초산조제마늘은 정제수(물)에 초산 0.5%이상, 식염 12.0%이하의 함량이 용해되어 있는 용액에 마늘이 혼합되어있는 상태
 - * 식품첨가물공전에의거 첨가물로 합성감미료 및 합성보존료 등이 첨가물로 포함 될 수도 있음
- 03년도 관세율 : 기본세율 30%

수입마늘

○ 연도별 수입실적

(단위 : 톤/천\$)

구 분	'98	'99	'00	'01	'02	'03(6)
수량	2,148	3,631	2,735	3,150	3,623	2,790
금액	913	1,322	1,636	2,102	2,202	1,399

자료 : www.kita.net/종합무역정보/한국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 수입국가는 가격이 저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산이 대부분이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소량이 수입됨
- 96년까지 민간업체의 수입 물량은 1,000톤 미만의 물량이 수입되어왔으나, 97년부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02년도에는 3,623톤이 수입됨

○ 포장재 및 규격

구 분	규 격	포장재		보관온도
		속포장	겉포장	
대포장	400kg	비닐	나무상자	상온보관
중포장	18kg	pvc	-	"
소포장	200g, 500g 1kg, 4kg	비닐	-	"

7. 수입 마늘 유통실태

가. 국영무역품(일반내수용)

1) 신선마늘

가) 수입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입된 마늘이 국내에 도착되면 수입절차에 따라 검사를 필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창고로 운송보관, 국내산 신선마늘의 성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 국내 수급동향 등을 고려하여 판매함

○ 판매방법 : 공매, 도매시장 상장(판매비율 : 공매 40%, 상장 60%)

- 공매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직접 시행한데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관내에서 농수산물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들로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함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인별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카드를 작성 비치하며, 입찰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접수한 후 입찰참가자격증을 발급하고 공사(지사)에서 실시하는 공매입찰에 참여함
-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수량에 대한 단가입찰방법으로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판매대상자를 제한 할 수 있음
- 입찰은 당회 입찰한도량, 1인당 한도량, 출고창고명, 출고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게시공고하며, 입찰참가를 등록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찰실시 전까지 입찰장에 입장하여 견본(현물)을 종랍한 후 OMR카드에입찰가격을 작성 제출함
- 낙찰자의 결정은 유효한 입찰자로서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중에서 고가순, 물량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도매시장 상장

- 도매시장상장판매는 농수산물비축사업세부실시요령 제68조(상장판매방법)에 의거 대상 도매시장과 입찰참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명단, 상장품목, 수량, 판매시기, 수수료, 약정위반 시 제재조항 등이 포함된 상장판매약정을 계약체결하고 시행함

나)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입마늘이 상장 의뢰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법인별 소속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들에게 입찰사항(입찰일시, 품명, 산지, 모선명, 당일판매물량, 1인당 한도물량, 낙찰자 결정방법, 인수창고, 입찰시작 및 마감시간 등)을 공고한 다음, 입찰당일 경매대상 마늘 견본을 종랍케 한 후 경매를 실시함

○ 경매방법 : 기록식

○ 낙찰자 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고가순, 물량순으로 결정함

- 도매시장의 법인은 입찰참가 중도매인들의 입찰서를 제출 받아 취합 농수산물유통공사에 mail로 전송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낙찰자를 통보 받아 해당중도매인에게 통지하고 낙찰 대금납부 및 현물을 인수토록 조치

수입마늘

- 판매수수료 : 2.5%(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징수)

다) 공매등록업체 및 중·도매인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매등록업체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수입 신선마늘은 판매(공매·상장)가 있을 시 입찰에 참여하여 확보 전량을 깎마늘로 가공하여 판매함
-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대부분 피마늘 보다 깎마늘을 많이 취급하고있음
 - 깎마늘을 많이 취급하는 이유는
 - 깎마늘은 상장의 품목으로 깎마늘 공장에서 직공급받는 편리함이 있고
 - 대량수요처 및 일반소비자 들이 깎마늘 선호로 취급비율이 높아짐
- 취급품목 : 대부분 마늘·생강 등 양념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함
- 거래대상
 - 깎마늘 : 식자재업체, 대량수요처 등에 납품과 점포에서 트럭행상, 채소전문소매상, 일반소비자 등에 판매
 - 피마늘(국산·수입) : 깎마늘공장, 대량수요처에 판매
- 거래단위
 - 깎마늘 : 대부분 kg, 판 단위로 계근 판매하며,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는 갈아서 판매하기도 함
- * 수입 깎마늘 판매시는 원산지를 표시함

라) 소매상

- 소매상의 형태
 - 소매상은 채소전문소매상,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트럭행상 등이 있으며 소매상들은 깎마늘과 피마늘을 모두 취급하고있으나 대부분이 깎 마늘을 많이 취급하고있으며, 수입 신선(피)마늘은 취급하지 않음
- * 수입 신선(피)마늘은 공매, 상장 판매된 후 대부분 실수요업체에 납품되거나 깎마늘로 가공되어 판매됨
- 소매상의 구입방법
 - 대부분의 소매상은 직접 도매시장에나가 양파, 대파, 생강, 감자, 상추, 수박, 참외등 타 과채류와 같이 구입하며
 - 구입한 물품의 운송은 자가차량을 이용하거나 1톤 트럭을 용차함
 - 소규모 채소가게, 식품가게의 경우는 1~2일 간격으로 트럭행상들로부터 공급받고있음

- 소매상의 판매
 - 소매상의 깎마늘 판매는 대부분 kg, 관 단위로 계근 판매(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는 갈아서 판매)하며, 피마늘은 그물망소포장품과 접단위로 판매함

2) 건조마늘

- 수입목적
 - 시장접근물량(MMA)을 신선마늘로 수입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농가 및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보관이 가능한 건조마늘로 수입하여 MMA이행 율을 제고
- 수입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입된 마늘이 국내에 도착되면 수입절차에 따라 검사를 필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 유통공사 비축창고로 운송 보관, 신선마늘의 성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 국내 수급동향 등을 고려하여 판매함
- 판매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공매만 실시
 - 공매방법 : 신선마늘 판매와 동일
- 사용용도 : 면류용스프, 다데기제조원료로 이용됨

나. 민간수입품

1) 냉동·탈피마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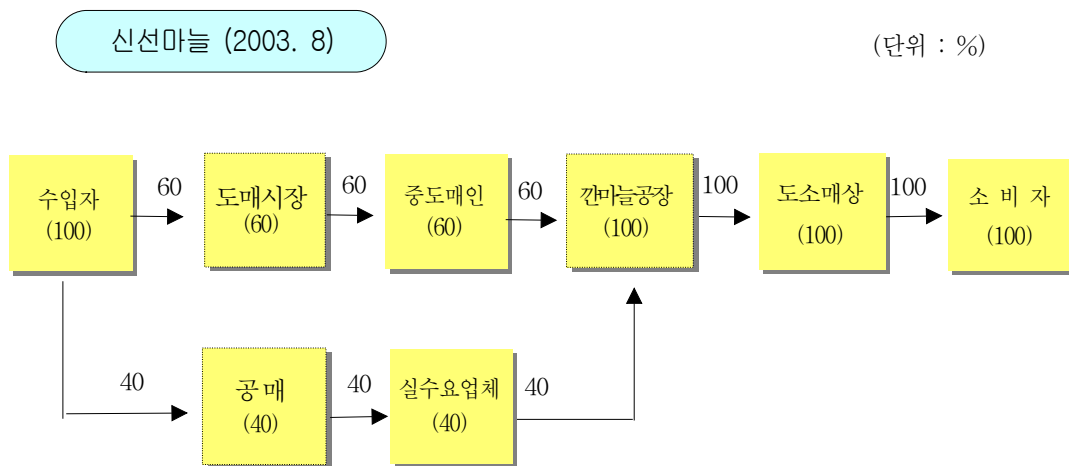
- 민간업체들이 수입하는 냉동·탈피마늘이 항구에 도착되면 제반절차에 따라 검사 등을 필한 후 관세 등을 납부 통관하여 운송 보관, 용도에 따라 전량 판매함
- 냉동·탈피마늘의 종류 및 용도
 - 내부발아(싹)가 나있는 마늘 : 시장판매용
 - 내부발아(싹)가 없는 마늘(일명:밍그리) : 가공용
- 민간업체에서 수입한 냉동·탈피마늘의 약 40%정도는 가공용(젓갈공장, 장류공장, 김치공장, 스프제조업체 등)으로 직공급 되고
- 납품업자를 통해 약 60%정도가 중, 소·대형요식업소 등의 양념용 등으로 공급되며
- 일반가정 수요는 없음
- 식품업체·요식업소에서 냉동·탈피마늘을 선호하는 이유
 - 식품업체 및 요식업소에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단가가 다소 낮은 냉동·탈피마늘을 신선마늘과 혼합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됨

수입마늘

2) 식초·초산조제마늘

- 민간업체들이 수입하는 식초·초산조제(통마늘·깐마늘)마늘이 항구에 도착되면 제반절차에 따라 검사 등을 필한 후 관세 등을 납부 통과하여 운송 보관, 조립공장, 식자재업체, 대형마트, 재래시장, 요식업소 등에 전량 판매함
 - 수입 대포장품(400kg) 식초·초산조제마늘은 전량이 납품업체에 공급되어 소포장(100g, 200g, 500g, 1kg, 4kg)으로 재 포장된 후 대형마트, 요식업소, 소매시장 등에 공급됨
 - 수입 중·소포장품(18kg, 4kg, 1kg 500g, 200g)은 식자재업체 40%, 조립공장(단무지, 밑반찬공장) 30%, 마트·재래시장 30%정도 공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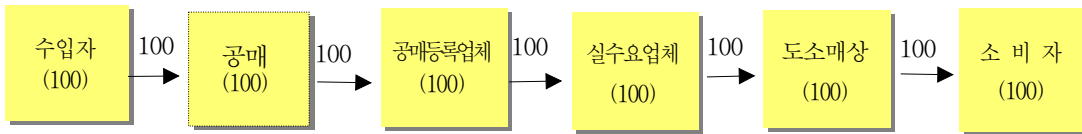
8. 유통경로



* 주유통경로는 수입자(유통공사) → 중도매인 → 도·소매상 → 소비자의 3단계

건조마늘 (200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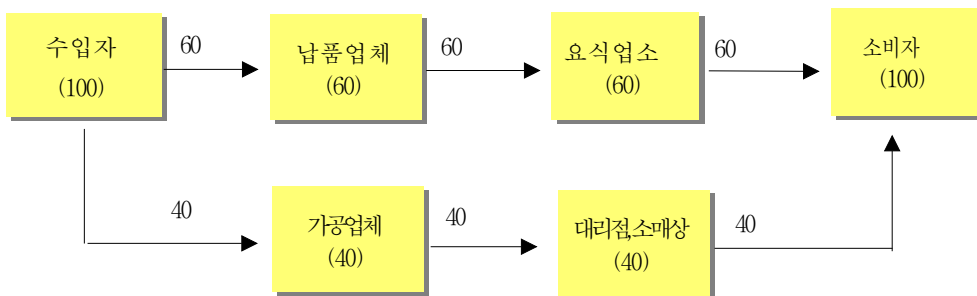
(단위 : %)



주) 실수요업체에서는 면류용스프, 다데기 등의 원료로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됨
* 주유통경로는 수입자(유통공사) → 공매등록업체 → 실수요업체 (가공) 의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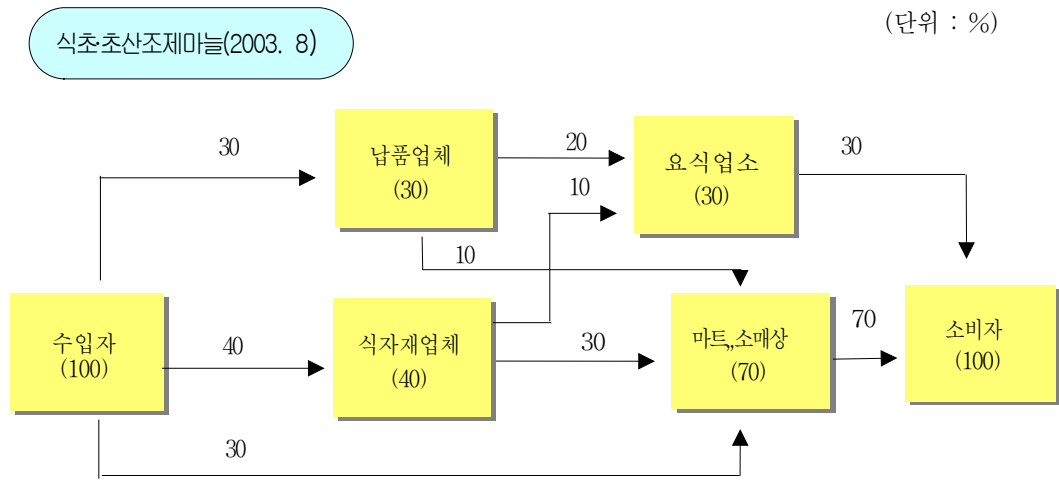
냉동·탈피마늘(2003.8)

(단위 : %)



주) 가공업체에 공급분은 것갈양념, 장류제조, 김치, 스프 등으로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됨
* 주유통경로는 수입자 → 납품업체 → 요식업체 → 소비자의 3단계

수입마늘



* 주유통경로는 수입자 → 식자재업체 → 마트, 소매상 → 소비자의 3단계

9. 유통비용

□ 비용별

2003. 8

(단위 : %)

구분	평균	국영무역품		비고	
		신선마늘	건조마늘		
수입가액비율	134.5	98.7	179.3		
유통비용율	△ 34.5	10.3	△ 79.3		
비용별	직접비	78.4	54.7	102.1	관세, 통관비, 정선, 내륙운송비등 농안기금에 전액 불입
	기타운영비 및 이윤	△ 112.9	△ 44.4	△ 181.4	
가격 (원/kg)	수입가격	2,067.9	1,087.8	3,047.9	
	공급가격	1,458.4	1,216.9	1,700.0	

○ 유통경로 : 유통공사 → 공매·상장 → 중도매인 → 실수요업체

* 판매(공매, 상장)이후 유통비용은 생략하였음

주) 수입신선마늘과 건마늘은 MMA(최소시장접근물량)수입의무량을 수입한 물품으로서 국내생산농가 및 관련산업의 보호를 위해 판매(방출)시기를 조절하여야 하므로, 장기보관에 따른 보관제비 등이 발생되고 비수기에 판매하므로 가격도 낮게 형성되어 적자가 발생됨

- 적자부분은 농안기금에서 보전

수입 신선마늘 유통비용 명세표 (1)

2003. 8. 공매

(단위 : 원/kg, %)

구분	금액	비율	산출근기		비고	
			단위	금액		
유통공사	수입가격	1,087.8	84.5	톤	1,087,870	CFR가격 ('02.12기준)
	관세	544.4	42.3	톤	544,440	CIF가격*50% 부두하역비, 통관비, 검사비, 내륙운송비 등
	부대비	50.5	3.9	톤	50,589	
	보관제비	53.3	4.1	톤	53,300	
기타운영비 및 이윤	△ 448.4	△ 34.8				
공매	판매가격	1,287.9	100.0	톤	1,287,901	

수입 신선마늘 유통비용 명세표 (2)

2003. 8. 상장

(단위 : 원/kg, %)

구분	금액	비율	산출근기		비고	
			단위	금액		
유통공사	수입가격	1,087.8	94.9	톤	1,087,870	CFR가격 ('02.12기준)
	관세	544.4	47.5	톤	544,440	CIF가격*50% 부두하역비, 통관비, 검사비, 내륙운송비 등
	부대비	50.5	4.4	톤	50,589	
	보관제비	53.5	4.7	톤	53,300	
	상장수수료	28.7	2.5	톤	28,700	
기타운영비 및 이윤	△618.9	△54.0	톤			
상장	판매가격	1,145.8	100.0	톤	1,145,856	

수입마늘

수입 건조마늘 유통비용 명세표 (2)

2003. 8. 공매

(단위 : 원/kg, %)

구분	금액	비율	산출근기		비고	
			단위	금액		
유통공사	수입가격	3,047.9	179.3	톤	3,047,980	CFR가격 (’00년수입)
	관세	1,524.0	89.6	톤	1,523,990	CIF가격*50% 부두하역비, 통관비, 검사비, 내륙운송비 등
	부대비	186.6	11.0	톤	186,608	
	보관제비	25.4	1.5	톤	25,400	
기타운영비 및 이윤	△3,083.9	△181.4	톤			
공매	판매가격	1,700.0	100.0	톤	1,700,000	